

[2025 박문각 행정사 1차 조민기 민법총칙 기본서] 정오표

※ 정오 사항은 [초판\(2024.9.10.\)](#) 발행 도서에 해당됩니다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315p 문제 04 지문① 해설	① 기간을 일·주·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(제157조 본문). 따라서 기산점은 6월 2일 오전 0시이고 만료점은 6월 3일 오후 12시이다.	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(제161조). 따라서 원래 만료일은 6월 3일 24시이어야 하나, 6월 3일이 토요일이고, 6월 4일이 일요일이므로, 최종적인 만료일은 6월 5일(월) 24시이다.